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53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 김현정 • 모경종 • 민병덕

민형배 · 박상혁 · 이광희

이상식 · 정성호 · 정준호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상태표상의"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상태표상의"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대차대조표를"을 "재무상태표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 중 "정하는 대차대조표"를 "정하는 재무상태표"로, "기준대차대조표"를 "기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3호·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제5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생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당한 기간 동안 <u>대차대조</u>	2 <u>재무상태</u>
<u>표상의</u> 자본총계가 납입자본	<u> 표상의</u>
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본총액(<u>대차대조표상의</u> 자	1 <u>재무상태표상의</u>

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 2. ~ 5. (생략)
- ③ ~ ⑦ (생 략)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 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 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 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 견에 따라 수정한 <u>대차대조표</u> 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38조(과징금) ① · ②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u>재무상태표를</u>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과징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 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 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u>정하는</u>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u>기준대차대조표</u>"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 채액
-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u>기</u> 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가. ~ 다. (생략)
-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제 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

3	
	정하는 재무상태표
	<u>기준재무상태표</u>
0	
2.	
	기준재무상태표상
	<u> </u>
3.	
	가. ~ 다. (현행과 같음)

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u>기준대차대</u> 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4.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가. ~ 다. (생략)
- 5. 제18조제4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u>기준재</u> 무상태표상
	一一
4.	
1.	
	-기준재무상태표상
	가. ~ 다. (현행과 같음)
5.	
	- <u>기준재무상태표상</u>
6	

해당 자회사 주식의 <u>기준대</u> <u>차대조표상</u> 장부가액의 합계 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로 나눈 금액에 해당 자 회사 발행주식 중 자신이 보 유하지 않은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7. 제2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u>기준대차대조표상</u>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 8. (생략)
- 9. 제2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 식, 채권 등의 <u>기준대차대조</u> 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 제20조제3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도록 한 주식, 채권 등의 <u>기준대차</u> 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u>기준재</u>
	<u>무상태표상</u>	
7.		
	기준재무상태표	주상
	_	
Q	(현행과 같음)	
9.	, = 3 , = = /	
<i>J</i> .	· 	
	<u>기준</u>	_
1.0	<u>표상</u>	
10)	
	무상태표상	